

# 행정법관계의 내용

# 행정법관계

## 행정법관계의 당사자

- 주체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)
- 공무수탁사인
- 행정법관계의 종류 (특별행정법관계)

## 행정법관계의 내용

- 국가적 공권
- 개인적 공권
- 공의무
- 공권, 공의무의 승계

##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

- 공법상 사건
- 공법상 사무관리, 부당이득
- 사인의 공법행위

# 국가적 공권

- 공권
  - 국가적 공권
  - 개인적 공권
- 국가적 공권이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**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**
  - 권한의 성격이 강함
  - 목적기준: 조직권, 경찰권, 행정계획권, 조세권
  - 권리내용기준: 명령권, 강제권, 형성권

# 개인적 공권

-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주어진 법적인 힘
- 성립요건

- ① 강행법규(공법)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부과 (강행법규성)
- ②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(사익보호성)

#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

- 공법이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의 결과로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
- 구별실익
  1. 원고적격 인정여부
  2.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발생 - 반사적 이익은 손해X
- 구별기준 -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의 목적  
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적 이익이어야 함

## 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

- ① 공법상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
- ②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인의 이익도 보호할 것
- ③ ~~訴求可能性~~

##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

- ① 법률의 헌법에 대한 적용우위의 원칙 (우선적으로 개별 법규범에서 인정근거를 찾아야 함)
- ②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개인적 공권의 성립인정 가능

# 개인의 지위강화

-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가?
  -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인정
  - 판례는 경쟁자소송(경업자소송), 경원자소송, 이웃소송을 인정

# 경쟁자소송 (경업자소송)

-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제3자에게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
  - 영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가 받는 이익이 법적 이익인지 반사적 이익인지의 문제
  - 법적 이익으로 본 사례(판례)
    - **특허**로 받는 영업자의 이익
    - 주유소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(대법원)
  - 법적 이익을 부정한 사례
    - **허가**로 받은 영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봄

-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의 취소청구
  -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or 단순한 경제적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인정
- ①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
  - 신규노선 연장인가처분에 대한 기존사업자의 취소청구 인정
  -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화 방지 목적(법률상 이익)
  - 동일 구역 내 동정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의 증차
- ② 기존업자가 허가기업인 경우
  -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같은 품종의 제조판매업자의 취소청구
  -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기존 숙박업자의 취소청구
- ③ **허가요건으로 거리제한/영업허가구역 규정이 있는 경우**  
**공익뿐만 아니라 기존허가업자의 영업상 개인의 이익을**  
**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봄 → 원고적격 인정**

# 경원자소송

-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

경원자관계에 있는 경우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은 배타적 관계에 있게 되므로;

- 競願關係의 존재만으로 신청이 거부된 경원자는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
- 판례

# 이웃소송(인인소송)

-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
  - 판례: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계법규의 보호 목적에 따라 결정 → 개인적 이익보호하면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 인정
  - 인정판례: 청주시 연탄공장, 원자로 부지승인, 환경영향평가 구역 내 주민
  - 부정판례: 상수원보호구역 주민(88면 판례3)

---

-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경향 - 교과서

#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

-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- 법적 성질
  - 형식적 권리: 특정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어떠한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(≠ 실질적 권리)
  - 실체적 권리: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정결정을 청구하는 권리
-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가?  
즉,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?

#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 인정여부

- 긍정설

청구권의 전제조건인 ① 행정청의 의무, ② 사익보호성이 충족된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인정됨.

실체적인 권리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장할 실익이 있다고 봄 예) 재량행위의 신청에 부작위로 대응하는 경우

- 부정설

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이 경우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룰 수 있음. 특별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실익 없다 봄

## 0으로의 재량수축

- 예외적인 경우에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특정한 결정만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경우 (재량감소)

### **재량이 축소되고 하나의 선택만이 요구되는 경우**

- 사람의 신체, 생명, 재산에 중대한 위험존재하고 행정권의 발동으로 그러한 위험이 제거될 수 있을 때

# 행정개입청구권

-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(행정행위발급청구권)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- 긍정설
  -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개입의무 有
  - 행정권발동으로 인한 제3자의 룰상 이익 있음
  - 생명, 신체, 재산에 대한 긴박한 위험구제를 위해 필요함
- 부정설
  - 부작위소송 및 소의 이익으로 해결, 필요없음
- 판례 - 인정한 경우 거의 없음

# 공권·공의무의 승계

- 행정주체의 승계 - 법률의 근거 필요
- 사인의 승계
  -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
  - ① 권리, 의무가 이전에 적합하고
  - ②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

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승계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

공법상 의무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승계가능